

재항고장

사 건 서울고등검찰청 2016고불항63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원처분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4987)

재항고인(고 발 인) 권준

피재항고인(피의자) 박현주 외 3인

서울고등검찰청 2016고불항63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담당검사는 피재항고인들(피의자들, 이하 ‘피의자들’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재항고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 합니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 항 고 취 지

서울고등검찰청 2016고불항6345(원처분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49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고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불기소이유 및 재항고이유의 요지

가. 불기소이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6형제24987 증권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원처분검사는, ①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2014. 8.경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씨디아아이비 벤처, 씨디아아이비 캐피탈(이하 'CDIB'로 통칭합니다)이 매도한 미래에셋증권 주식 150만 주 중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140만 주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시세조종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시효는 2016. 3. 8.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② 시세고정행위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2014. 8.경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세조종 개연성 발견하지 못하였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전혀 없으므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소시효는 2013. 6. 29.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③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입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손해액 특징이 어려워, 피의자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는 2013. 6. 29.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고사건 검사는 원처분검사와 같은 이유로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재항고이유

그러나 원처분검사의 각 처분은, CDIB가 미래에셋계열사에게 위 매각물량 150만 주 외에 보유물량 50만 주를 2007. 3. 13.까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시기의 매매행위는 기존의 행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입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시효는 2017. 3.경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 부당합니다(시제 고정행위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합니다).

2. 재항고이유

가. 피의자들의 거래 행위 분석

1) 피의자들의 동기

미래에셋 계열사이든 그 어느 회사이든 간에 주식매수를 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당시 2006. 2. 15.자에 상장된 미래에셋증권 주식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이던 CDIB도 취득가격(11,500원)

과 공모가격보다 훨씬 높은 장중 거래가격(장내매도가격)과의 차익실현을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CDIB가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매도하려고 할 경우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 하락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의 계열사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CDIB의 대량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후에 매수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CDIB 입장에서도 1거래일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낼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1거래일에 대량매도 주문을 낼려고 할 어리석은 결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IB에서 1거래일(2006. 2. 17.자 및 2006. 3. 9.자 등)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낸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CDIB의 대량매도물량을 받아주기로 의사연락(통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CDIB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측면과 더불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가로 유지시켜, 대주주인 피의자 박현주의 지분가치를 유지시켜, 박현주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CDIB의 대량매도 주문 및 미래에셋계열사에서 CDIB의 대량매도 물량을 고가에 매수한 것은 통정에 의한 주식거래이고, 미래에셋계열사들의 업무상배임(고가매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은 그 당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의도적으 인수하였다고 보도된 기사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미래에셋 대만 주주 252억 차익 .. CDIB, 50만주 매각

한국경제 기사입력 2006-02-22 17:34 최충수정 2006-02-22 17:34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CDIB측이 장기간 투자한 데다 규제 등의 문제로 지분을 일부 축소할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래에셋생명의 고유자산으로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CDIB와의 통정에 따른 업무상배임(고가매수) 행위는 2007. 3.경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2) 2006. 02. 17.자 미래에셋생명과 CDIB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가) 거래 내용

2006. 02. 17.자 주식매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	주가변동	거래량(A)	CDIB 매도규모(B)	CDIB 매도비중(B/A)	미래에셋 생명 매수규모(C)	미래에셋 생명 매수비중(C/A)
2006/02/15	65,500		2,350,642	0		0	
2006/02/16	61,900	-3,600	1,559,685	0		0	
2006/02/17	63,100	1,200	971,555	500,000	51.46%	500,000	51.46%

	씨디아이비 벤처, 씨디아이비 캐피탈의 매도 내용	미래에셋생명의 매수 내용
수량	50만 주	50만 주
형태	장내 거래	장내 거래
거래 단가	61,721원	62,000원
거래액	차익 252억 원	매입액 311억 원
공시일	2006. 3. 2.	2006. 2. 22.

나) 언론 보도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사장은 2006. 1. 25.경 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가 보유 중인 미래에셋증권 주식이 상장 이후에 매도물량으로 나올 우려가 전혀 없다고 홍보하였는바,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사장이 불과 20일 전 IR에서 밝힌 내용과는 달리 2006. 02. 17.에 CDIB의 보유주식 50만주를 매각한 것입니다.

※ 2006. 01. 26.자 매일경제신문은 “2006. 01. 25.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중략)...기존주주 중 대만의 CDIB(상장후 지분을 9.6%)가 상장 후에도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2005. 2. 22.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CDIB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각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요 주주인 CDIB가 최근 미래에셋증권 50만주를 매각, 400%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고 보도하게 되어 시장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셋캐피탈이 2006. 02. 22.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06. 02. 22.>”에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이 미래

에셋증권주식 50만주를 매입한 것을 공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 위 공시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매입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CDIB가 매각한 것을 알 수 없었던 바, 기자의 추가취재를 통하여 CDIB의 매도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 통정거래에 따른 주가 조작 및 배임행위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2006. 02. 15.의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36%의 급등세를 시현한 후 다음날(2006. 02. 16.) 5% 이상 급락하자 언론에서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보도하였습니다.

※ 2006. 02. 16.자 이데일리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청개구리’”라는 기사에서 ▶ 미래에셋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틀째 5%이상 급락하고, 특히 증권업 지수가 상승할 때 반대로 하락하는 이례적인 모습, ▶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대비 36.45%상승한 6만 5,500원을 기록했으나, 다음날 3,600원(5.5%)하락한 6만 1,900원을 기록한 것, ▶ 상장 이틀 만에 급락한 것과 관련 주가가 벌써 고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시장상황(대규모물량출회, 주가하락)에서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인 CDIB가 대규모물량(50만주)을 매도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고가에 시장거래량의 52%에 달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는바, 이는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자	종가	주가변동	거래량(A)	CDIB 매도규모(B)	CDIB 매도비중(B/A)	미래에셋 매수규모(C)	미래에셋 매수비중(C/A)
2006/02/15	65,500		2,350,642	0		0	
2006/02/16	61,900	-3,600	1,559,685	0		0	

2006/02/17	63,100	1,200	971,555	500,000	51.46%	500,000	51.46%
------------	--------	-------	---------	---------	--------	---------	--------

시장에서는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당시 시장에서는 2대주주인 CDIB가 대량으로 매각하는 것도, 미래에셋생명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되고, 고가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되면서 오히려 전일대비 1,200원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의 CDIB가 매도한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2006. 04. 07.자 이데일리는, "미래에셋생명의 전체 주식 직접투자 99% 이상이 미래에셋증권 주식, 고객 피해 우려, 운용 그룹 미래에셋그룹이 분산투자 기본도 지키지 못해, 리스크 불구 미래에셋증권 매수배경에 의혹", "고객 돈을 계열사 주가 떠받치기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끼칠 경우, 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가능성",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상장 때부터 높은 '공모가 논란'으로 말이 많았고, 미래에셋생명의 증권지분 매입은 운용의 목적보다는 결국 계열사 밀어주기 등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의심,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이번 상황을 각별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문제점들과 감독당국의 동향을 보도하고 있음.

3) 2006. 3. 9.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CDIB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가) 거래 내용

일자	종가	주가변동	거래량(A)	CDIB 매도규모(B)	CDIB 매도비중(B/A)	미래에셋 매수규모(C)	미래에셋 매수비중(C/A)
2006/03/03	61,600		73,366	0		0	

2006/03/06	62,600		48,837	0		0	
2006/03/07	61,500		53,515	0		0	
2006/03/08	61,500		56,550	0		0	
2006/03/09	62,200	700	1,066,414	1,000,000	93.77%	900,000	84.39%
2006/03/10	62,000		48,343	0		0	
2006/03/13	62,700		73,756	0		0	
2006/03/14	60,000		56,283	0		0	

	씨디아아이비 벤처, 씨디아아이비 캐피탈의 매도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매수 내용
수량	22만 주	78만 주	90만 주
형태	장내 거래	장내 거래	장내 거래
거래 단가	61,223원	61,223원	61,500원
거래액	차익 110억 원	차익 383억 원	매입액 544억 원
공시일	2006. 3. 13.	2006. 3. 13.	공시의무 없어 공시하지 않음

나) 통정거래에 따른 주가 조작 및 배임행위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2006. 3. 9.자 매입일 직전/직후의 시장 총거래량이 불과 5만 주에서 7만주 수준이었던 바, 2006. 3. 9.자 CDIB의 매물출회 규모(100만주)는 일일 시장 거래량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정상적 거래였다면 주가의 급락을 가져올 대량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CDIB의 1백만주의 매도물량은 2006. 03. 09. 당일거래량의 94%에 달하는 규모이고, 미래에셋자산의 90만주의 매수물량은 2006. 03. 09. 당일거래량의 85%에 달하는 규모로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입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상당기간 급락할 정도의 대규모 매도물량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대주주인 CDIB가 매도물량으로 내어놓은 미래에셋증권 주식(100만주)을 고가에 매수해 줌으로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고객들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비싸게 매입함으로써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객(펀드가입자 등)의 투자수익을 고려하여 거래소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진정한 투자목적이었다면, CDIB의 100만주 매도물량으로 인하여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이 상당히 하락했을 때 매수하여야만 운용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CDIB에서는 2000. 9.경 미래에셋증권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1일 100만주나 되는 대량의 매도물량을 쏟아낼 경우 주가가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사정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CDIB에서 1일 100만주나 되는, 엄청난 매도물량을 쏟아낸 것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CDIB의 대규모 매도물량을 장내에서 매수해 주겠다는 통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매도물량을 장내에 퍼부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CDIB가 미래에셋증권의 매도물량을 내어놓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대규모로 장내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을 매집한 것은 상호간에 통정한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CDIB의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2006. 03. 15.자 이데일리온 “믿을 수 없는 IR”이라는 기사에서 “미래에셋, 대만자금은 돈독한 파트너라더

니, 상장 1달여 만에 6백억 ‘떡튀’.. 신뢰성에 또 먹칠”라는 제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칼 아이칸의 KT&G경영권 요구로 국부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 투자했던 대만자금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주식을 대량매각해 6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겨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100만주의 평가차익을 합할 경우엔 1,000억 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CDIB의 주식대량처분은 지난 1월 미래에셋증권 기업설명회(IR)에서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은 이 IR에서 CDIB는 상장이후에도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며 돈독한 파트너로서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 2006. 3. 15. 이후 미래에셋그룹계열사(자산운용, 생명)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수

가) 매수내용

일자	종가	주가 변동	거래량(A)	CDIB 매도규모(B)	CDIB 매도비중(B/A)	미래에셋 매수규모(C)	미래에셋 매수비중(C/A)
2006/03/15	58,500		961,188		0.00%	240,000	24.97%
2006/03/16	58,000		352,257		0.00%	135,178	38.37%
2006/03/17	58,400		255,446		0.00%	50,000	19.57%
2006/03/20	59,500		114,752		0.00%	20,000	17.43%
2006/03/21	59,500		78,434		0.00%	49,178	62.70%
2006/03/22	58,000		55,552		0.00%	10,580	19.05%
2006/03/23	57,700		214,246		0.00%	39,420	18.40%
2006/03/24	59,600		132,950		0.00%	50,000	37.61%
2006/03/27	58,300		35,729	0		0	
2006/03/28	58,000		79,283		0.00%	17,260	21.77%

2006/03/29	58,000		74,243		0.00%	15,740	21.20%
2006/03/30	58,300		30,377		0.00%	4,550	14.98%
2006/03/31	59,800		103,823		0.00%	12,450	11.99%
2006/04/03	61,200		151,971		0.00%	4,550	2.99%
2006/04/04	61,400		67,111		0.00%	12,450	18.55%

나) 시세조종혐의

미래에셋 그룹은 2006. 3. 15. 이후에도,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시장 총거래량의 63%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여 계열사의 유일한 상장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격을 불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6. 4. 7.자 이데일리과 2006. 4. 10.자 문화일보 등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주가 하락가능성에도 미래에셋생명에서 대규모로 미래에셋증권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혹을 보도하여, 마침내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주가를 예의주시하도록 환기시켰습니다.

5) 2006. 4. 21.부터 2006. 6.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증권주식 매입

가) 매수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 4. 21.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시장 총 거래량의 26%에 달하는 물량(2만 주)을 매입하고, 2006. 6. 23.과 같은 달 29. 및 30.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시장 총 거래량의 최대 28%에 달하는 물량(총 3만 1,000주)을 매입하였습니다.

일자	종가	주가변동	거래량(A)	CDIB 매도규모(B)	CDIB 매도비중 (B/A)	미래에셋 매수규모(C)	미래에셋 매수비중(C/A)
2006/04/21	61,000		77,300			20,000	25.87%
2006/06/23	47,600		58,063			5,000	8.61%
2006/06/29	50,000		39,826			10,000	25.11%
2006/06/30	52,900		58,088			16,000	27.54%

나) 시세조종혐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당시 주식형펀드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기관이었으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의 매입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 6. 23. 미래에셋증권의 주식가격이 상장 이후 최저가인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자 시장 총 거래량의 최대 28%에 달하는 매수를 다시 시작하여 주가를 공모가격 이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핵심자산이었던 3개의 미래에셋계열 운용사를 미래에셋증권의 상장 직전인 2006. 1.경 박현주 회장 개인에게 넘김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공모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CDIB를 비롯한 차익매물이 급격히 출회될 것이 예견되어서 상장 당일

인 65,500원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두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미래에셋증권 주식이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매도물량이 대량 출회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상장이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2006. 06. 23.의 주가는 공모가인 48,000원 이하인 47,60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을 위한 미래에셋그룹의 핵심계열사(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들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인 CDIB의 대규모 매도물량(밝혀진 매도물량만 150만 주)의 고가매입과 무리한 고가매입 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에셋생명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객들의 피해를 숨기기 위한 불법안정조작과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2006. 6. 23.에 주식가격이 공모가 48,000원보다 400원 하락한 47,6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고객은 2006. 06. 23. 현재로 332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안정조작/시장조성행위(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인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6) 2007. 3.경 CDIB와 미래에셋의 거래

가) CDIB의 2007. 3.경 50만주 매도

고발인은 최근 CDIB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재무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2007. 3. 31.자 보고서). 위 자료에 따르면 CDIB가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의 미래에셋증권을 보유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위 2007년 1분기의 시작에는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106만 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2007. 3. 31.까지 339,328 주를 유/무상증자로 취득하였고, 5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2007. 3. 31.자 보고서 67쪽 참조).

Beginning Balance		Acquisition (Note 2)		Disposal (Note 3)			
Shares/Face Value/Units	Amount	Shares/Face Value/Units	Amount	Shares/Face Value/Units	Amount	Carrying Value	Gain (Loss) on Disposal
1,060,000	US\$ 85,483,871	339,328	US\$ 11,142,930	500,000	US\$ 31,613,297	US\$ 39,952,850	US\$ 26,456,837

그런데 2007. 3. 13.자 코스닥시장지에는 2007. 3. 13. 미래에셋증권 50만주가 거래되었음을 보여주므로(참고자료 2 2007. 3. 13.자 코스닥시장지), CDIB는 위 일시에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583,687	500,000	85.66	장종값
--------	---------	---------	-------	-----

나)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위 50만 주 매수

그런데 CDIB로부터 위 50만 주를 그 매수한 주체는 구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료

에 따르면, 미래에셋투신운용이 2006. 3. 13.에 총 550,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참고자료 3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내역).

미래에셋투신운용	20060313	매입	550,000	61,500	33,825
합계			550,000		33,825

그러나 실제로 2006. 3. 13.의 미래에셋증권의 거래량은 73,756주에 불과합니다(참고자료 4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2006. 3. 13.자 거래자료).

년/월/일	종가	대비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시가	고가	저가
2006/03/13	62,700	▲ 700	73,756	4,581,209,200	62,500	62,900	61,500

그렇다면 구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07. 3. 13.에 CDIB의 50만 주를 포함한 55만 주를 매수하였고, 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료는 연도에 오기가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증권 보유주식 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무상증자를 시행 후 2007. 3. 14. 금감원에 보고한 증권발행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유상증자기준일인 2007. 2. 6.자로 미래에셋증권주식을 총 941,000주 보유하고, 증자 이후에는 약 113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참고자료 5 2007. 3. 14.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7.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1%이상 소유자)

(단위 : 주, %)

주주명	증자전		증자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미래에셋캐피탈(주)	11,171,280	41.40	13,406,776	39.74	
(주)전흥	1,080,000	4.00	1,296,119	3.84	
CDIB CAPITAL LIMITED	1,060,000	3.93	1,272,117	3.77	
미래에셋자산운용	941,000	3.49	1,129,302	3.35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7. 4. 2.에는 총 1,540,085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7. 4. 2. 기준 미래에셋증권을 보유한 운용사별 특정종목 보유현황(참고자료 6)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SEQ	운용사	수량	평가액	운용사	시장
1	골드만삭스운용	23.00	0.01	0.03	C
2	동양운용	30,026.00	17.81	0.84	C
3	미래다스운용	5,276.00	3.13	0.04	C
4	미래에셋자산	1,540,085.00	913.27	1.05	C
5	삼성운용	70,728.00	41.95	0.17	C
6	신영운용	4,421.00	2.62	0.03	C
7	임이즈에셋운용	46.00	0.03	0.00	C
8	이스트스프링자산	274,595.00	162.84	1.05	C
9	칸서스운용	112,708.00	66.84	0.95	C
10	주요한자산	57,594.00	40.00	0.53	C

이처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7. 2. 6.부터 2007. 4. 2. 사이에 약 41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이것은 전체펀드 중 주식형에서 보유한 것으로, 다른 펀드들까지 포함하면 보유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CDIB가 2007. 3. 13. 매도한 50만 주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동기는 CDIB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약 50만 주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고, 그것은 대주주인 피의자 박현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CDIB와 공모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여 준 것입니다.

7) 소결

결국 CDIB와 미래에셋그룹의 공모에 의해, 피의자들은 2006. 2. 17.부터 2007. 3. 13.까지 CDIB의 미래에셋주식 보유분을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안정조작/시장조성행위(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인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나.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

1) 불기소이유

원처분검사는 2014. 8.경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씨디아아이비 벤처, 씨디아아이비 캐피탈이 매도한 미래에셋증권 주식 150만 주 중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140만 주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시세조종 혐의가 없

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시효는 2016. 3. 8.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장중대량매매방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가) 요건

장중대량매매(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¹⁾)는, ① 특이한 대량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일반적인 정상적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② 특정한 요건, 즉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신청한 거래에 대해서만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③ 동 거래가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되었음을 거래 당일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두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불법적 통정매매와 시세고정을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목적으로 거래를 함

1)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4차 일부개정 2006.7.7 제169호)

제31조(장중대량매매) ①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한다. 이하 이조 및 제32조에서 같다), 수량및가격이동일한매도호가및매수호가로 회원이매매거래를성립시키고자거래소에신청하는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6.7.7.>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일부개정 2006.2.8 규정 제143호]

제49조(장중대량매매) ①규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대량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의하여결정된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상적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중대량매매가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의2대주주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유일한 상장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를 고정시킬 의도로 이해당사자들인 CDIB와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미래에셋생명 및 미래에셋자산운용)간에 행해진 통정매매이자 시세고정을 위한 불법적 시세조종행위입니다.

장중대량매매는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회사들간의 거래로서 매수/매도의 원주문자들이 서로 알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통정매매에 해당됩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보면, CDIB 및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모두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영업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언론에서 미래에셋증권 등 미래에셋그룹의 관계자들이 CDIB에서 매각하는 것을 알고 매수한 것임을 언론에 밝히고 있음(참고자료 1 신문 기사 참조).

즉, 미래에셋계열사들이 CDIB가 장기간 투자한 것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에셋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미래에셋그룹대주주의 자산가치보전)하기 위하여 CDIB와 미래에셋계열사가 불법적으로 통정매매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수량, 가격 등이 동일하지 않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CDIB는 78만 주와 22만 주, 총 100만 주를 매도주문한 것으로 나오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같은 날 주식을 총 145만 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이 같아야 한다는 장중대량매매의 요건에 대해 CDIB보다 45만 주나 많은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나오므로, 장중대량매매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추가적 주문 45만 주에 대해 검찰 및 금감원의 조사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시세 조종을 위한 허수주문이었는지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3) 2007. 3. 13.까지 피의자들의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은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음

결국 이러한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은 CDIB가 보유한 106만 주를 모두 매도할 때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결국 2007. 3. 13.까지 위 위반행위가 계속되었으므로, 2007. 3. 13.까지 피의자들의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은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씨디아이비 벤처, 씨디아이비 캐피탈은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에게 위 매각

물량 150만 주 외에 보유물량 50만 주를 2007. 3. 13.경에 매도하였고, 이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죄의 공소시효는 2017. 3.경에야 완성되기 때문에, 원처분검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

다.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입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죄에 관하여

1) 불기소이유

원처분검사는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입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 피의자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는 2013. 6. 29.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고, 이득은 CDIB가 얻었음

피의자들이 CDIB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손실을 입고, CDIB가 이익을 챙겼다 할 것입니다.

그 경우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자산을 맡긴 개별 투자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 자체가 피해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실은 배임행위가 종료된 2006. 6. 30. 종가가 52,900원이고, 피의자들은 주식 266만 주를 총 1,599억 원, 주당 60,068원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약 190억 원의 손해를 입고, CDIB는 2006. 2. 17. 50만 주를 61,721원에 매도함으로써 44억 1,050만 원[8,821원(61,721원 - 52,900원) x 50만주]의 이익을 얻고, 2006. 3. 9. 100만 주를 61,223원에 매도함으로써, 83억 2,300만 원[8,323원(61,223원 - 52,900원) x 100만주]의 이익을 얻고, 시가 불상일에 나머지 106만주를 매도하여 불상액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2007. 3. 13.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CDIB로부터 50만주를 매수한 것과 위 2006.경의 거래는 포괄일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위 행위로 인한 제3자인 CDIB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이 명백하여, 공소시효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최후의 행위일이 2007. 3. 13.인 이상, 위 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07. 3.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입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이득을 본 자는 CDIB이며, 피의자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

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07. 3. 13.까지 있었던 거래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2017. 3.경 완성되기 때문에, 원처분검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부디 재기수사를 명해 주시어 원처분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 고 자 료

- | | |
|-----------|------------------------------------|
| 1. 참고자료 1 | 2007. 3. 31.자 보고서 |
| 1. 참고자료 2 | 2007. 3. 13.자 코스닥시장지 |
| 1. 참고자료 3 |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내역 |
| 1. 참고자료 4 | 미래에셋증권 주식의 2006. 3. 13.자 거래자료 |
| 1. 참고자료 5 | 2007. 3. 14.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 참고자료 6 | 2007. 4. 2.자 미래에셋증권 운용사별 특정종목 보유현황 |

첨 부 서 류

- | | |
|--------------|----|
| 1. 고발위임장 | 1부 |
| 1. 담당변호사 지정서 | 1부 |

2016. 7. 22.

재항고인(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 경 훈

담당변호사 김 용 철

담당변호사 정 혁 준

대검찰청 귀중